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신사범*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02년12월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과장 홍지선)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설계의 내실화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시가 발주 또는 출자·승인·인가 등을 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등 용역단계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때 및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시 설계자문을 받도록 정함 (안 제6조)
-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시 적정성을 위하여 심의의결 방법을 정함 (안 제10조)
-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정함 (안 제11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조례와 타 시.군 조례등을 비교 해 보았는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이 제외 되었는데 관련 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가? ○조례안 제6조의 자문대상중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건이나 되는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 10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종전에 설계자문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제도 시행은 없었는가? ○조례안 제12조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할 경우 본 위원회는 소홀해 지고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만큼 소위원회 구성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문위원 구성을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시.군 조례등을 참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음. ○동등한 자격이 있는 의원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해도 무방하다고 봄. ○도로과의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사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도로과는 년6~7건 정도 자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실.과장, 대학교수, 실무경험자, 기술사, 건축사등 으로 위원회를 구성 코자하며 위원수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됨.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위법에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정해져 있어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질 의	답 변
<p>○ 자문위원중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된 조례안인데 시의원의 참여로 관급공사의 진행상황 및 설계변경시 참작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은 타당하다고 보는데?</p>	<p>○ 건설공사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도 무방하다고 봄.</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경계 722
의결 년월일	2002. 12. 13. (제 11회)

제안년월일 : '2002. 12. 13.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공법변경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감시 견제기능이 있는 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여 사전 인지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2명이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수정.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제1호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을 “시의회 의원2명과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본청 및 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위원회 구성)</p> <p>①항 및 ②항 (생략)</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u>1.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분청 및 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u></p> <p>2호 내지 7호 (생략)</p>	<p>제3조(위원회 구성)</p> <p>①항 및 ②항 (제정안과 같음)</p> <p>-----</p> <p>-----</p> <p>-----</p> <p>1.시의회 의원 2명과 -----</p> <p>-----</p> <p>-----</p> <p>2호 내지 7호 (제정안과 같음)</p>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구성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관련 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시정리치순 2명라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위원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①위원회의 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구에서 시행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시·구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준설공사
3.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③중앙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요청) ①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와 공사설명서·사전검토서 및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원의 기피 및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방법) ①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영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기본설계·시공입찰서의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계점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전문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위원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전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대상사업 주관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
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